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2015. 12. 5.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목 차

I.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1
II. 첨부자료	9
1. 부의 및 가결안건	9
1)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11
2)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57
2. 회의록취록 전문	67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2015년11월26일(목) 개회11시4분, 폐회12시1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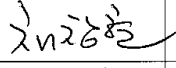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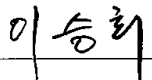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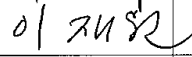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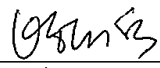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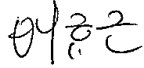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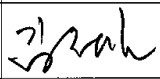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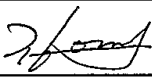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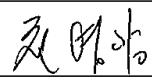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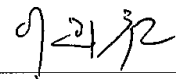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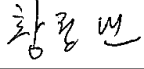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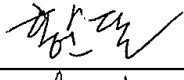
부의된 안건	의결상황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2.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3. 2016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추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함

□ 회의록 서명부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위원장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부위원장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代)	배 효 근		
6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종 필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입학관리본부	직 원	천 병 광		
11	산학협력단	직 원	이 희 천		
12	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황 정 민		
13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진 주 호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총무과장	배 효 근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위원 참석부

2015. 11. 26.(목)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위원장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부위원장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代)	배 효 근		
6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종 필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입학관리본부	직 원	천 병 광		
11	산학협력단	직 원	이 희 천		
12	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황 정 민		
13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진 주 호	.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총무과장	배 효 근		

<첨부자료목록>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부의 및 가결안건	제1호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제2호안건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호안건 2016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제3호 안건은 추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함
회 의 녹취록 전 문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녹취록	

<첨부자료>

1. 부의 및 가결안건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2015. 10.

금오공과대학교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 내용

당초 안					변경 안			
※ 지급계획 p.6 5. 예산 및 교직원현황 ○ 세부현황					※ 지급계획 p.6 5. 예산 및 교직원현황 ○ 세부현황			
영역	구분	교원	직원	합계	영역	구분	예산액	
교육	공통지표	1,130,310	-	1,130,310	교육	공통지표	1,130,310	
	선택+지정선택지표	455,465	-	455,465		선택+지정선택지표	455,465	
연구	공통지표	500,000	25,655	525,655	연구	공통지표	525,655	
	선택+지정선택지표	1,786,800	-	1,786,800		선택+지정선택지표	1,786,800	
학생지도	공통지표	657,055	-	657,055	학생지도	공통지표	657,055	
	선택+지정선택지표	164,264	452,000	616,264		선택+지정선택지표	616,264	
합계		4,693,894	477,655	5,171,549	합계		5,171,549	
※ 지급계획 p.6 2. 연구영역 ○ 평가지표					※ 지급계획 p.6 2. 연구영역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구분	항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선택지표	①교외 연구비 수주	기본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산학협력단 : (기간 중 입력자료)	선택지표	①교외 연구비 수주	기본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산학협력단 : (기간 중 입력자료)
	②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점/건				②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점/건	
	③저서(전문도서출판)	5점/건				③저서(전문도서출판)	5점/건	

당초 안					변경 안										
구분		항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구분		항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④특허(실용신안)출원		3점/건				④특허(실용신안)출원		3점/건					
		⑤지식(디자인)재산권)		2점/건				⑤지식(디자인)재산권)		2점/건					
		⑥기술이전		50만원당 1점				⑥기술이전		50만원당 1점					
		⑦국내 학회 참가		1점/건 ※ 3회차 참가부터 인정(증빙서류)											
지정 선택 지표	다 년 과 제	교내일반과제		건	700만원	지정 선택 지표	다 년 과 제	교내일반과제		건	700만원	개별 제출			
		중점연구과제		건	1,000만원			중점연구과제		건	1,000만원				
		신임교수연구과제		건	1,000만원			신임교수연구과제		건	1,000만원				
	연구논문 게재경비		건	6~10,000만원	연구논문 게재경비		건	6~10,000만원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	10만원 (1회 3건까지)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	10만원 (1회 3건까지)							
	국외 학술대회 발표		건	100만원	국외 학술대회 발표		건	100만원							
	국내 학회 참가		건	20만원 (연간 2건까지)	국내 학회 참가		건	실비정산							
	대외 연구과제 선정		건	30만원	대외 연구과제 선정		건	30만원							
※ 지급계획 p.10															
1. 교육영역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		- 책임시수 준수 ※ 미달 시 1학점당 기준액의 1%씩 감액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 미달 시 1학점당 기준액의 1%씩 감액		학사관리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		- 책임시수 준수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학사관리팀 공학교육혁신센터	
〈적요〉															
○ 공통지표1학기는 책임시수 이행률만 평가															

※ 지급계획 p.10															
1. 교육영역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		- 책임시수 준수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학사관리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		- 책임시수 준수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학사관리팀 공학교육혁신센터	
〈적요〉															
○ <삭 제>															

당초 안	변경 안																				
○ <신 설> ○ 학생 수강인원 : 학부 과목 중 순수 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함 ○ 선택지표 :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	○ 책임시수 미달 교원 예외 인정 : 보직교원 책임시수 면제 및 폐강 등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학생 수강인원 : 학부 과목 중 순수 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함 ○ 선택지표 :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																				
※ 지급계획 p.12 2. 연구영역 □ 연구영역 지급기준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예산(천원)</th><th>평가방식</th><th>비고</th></tr><tr><td>선택지표</td><td>연구활동 지원비</td><td>125,000</td><td>○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td><td>○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td></tr></table>	구분	항목	예산(천원)	평가방식	비고	선택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 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계획 p.12 2. 연구영역 □ 연구영역 지급기준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예산(천원)</th><th>평가방식</th><th>비고</th></tr><tr><td>선택지표</td><td>연구활동 지원비</td><td>125,000</td><td>○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td><td>○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td></tr></table>	구분	항목	예산(천원)	평가방식	비고	선택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 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항목	예산(천원)	평가방식	비고																	
선택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 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항목	예산(천원)	평가방식	비고																	
선택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 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계획 p.13 2. 연구영역 □ 평가지표 <적요> ○ 공통지표 기본연구 : 기존과제 및 교내과제 불가 ○ <신 설> ○ 선택지표 ②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 선택지표 ⑦ 국내학회 참가는 2회까지는 지정선택에서 인정하고, 3회차부터는 선택지표에서 인정	※ 지급계획 p.13 2. 연구영역 □ 평가지표 <적요> ○ 공통지표 기본연구 : 기존과제 및 교내과제 불가 ○ 공통지표 정책연구 : 정책과제는 내부 공모절차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선택지표 ②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 지급계획 p.15 3. 학생지도영역 □ 평가기준	※ 지급계획 p.15 3. 학생지도영역 □ 평가기준																				

당초 안				변경 안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공통 지표	학생면담	- 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 15회미만 시 회당 1%씩 금액 감액 ※ 다만, 학기당 최소 5회이상 학생면담 실시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입력 자료	공통 지표	학생면담	- 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입력 자료
※ 지급계획 p.18 [별표 1]				※ 지급계획 p.18 [별표 1]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공통 지표 또는 선택 지표	□학생 학사 상담 또는 지도	○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휴·복학, 자 퇴, 제적 등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지정 선택 과제	□ 학 사 상담 또는 지도	○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휴·복학, 자퇴, 제적 등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취·창업 분야, 기술 분야, 학사 행정 민원 분야 등을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	일지 및 결과보고서
	□학과 행사 상담 또는 지도	○ 학과 개강/종강, 세미나, 워크숍, 학 과 MT 등 학과행사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행 사 상담 또는 지도	○ 개강/종강, 세미나, 워크숍, 입학식/졸업식, 신 입생 OT, 대동제 및 공학제, 성년의 날, 체육 대회 등 내부 행사 지도 실적 ○ MT, 수련회, 농활, 국토대장정 등 외부 행사 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한 실적 ○ 행사 기간 중 학생 보호활동 지도	일지 및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공문
	□학생 안전지도 + 보호 활동 지도	○ 학생 보호(성폭력방지 등 야간방법활 동, 실험실연구 안전, 교통 또는 주차 지도 등) 활동 지도 — 전염병 예방 등 보건안전 활동 지도)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 도한 실적 ○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한 실적	일지 및 결과보고서
	□대학행사 학생지 도 실적	○ 입학식/졸업식, 신입생 OT, 대동제 및 공학제, 성년의 날 등 대학행사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현 장 실 습 및 취 업 (창 업) 지 도 실적		
	□학생 행사 입장 지도	○ MT, 수련회, 농활, 학생 체육대회 등 학생 행사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당초 안				변경 안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현장(교육)실습 지도	○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 하여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팀 코칭제 및 멘토링 운영 실적	○ 개인 또는 집단(부서) 단위로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코칭제를 실시한 실적 ○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 학생 1명당 2.0점 ※ 1개학기 기준(매주 1회 이상 15회 기준)	일지 및 결과보고서
	□팀 코칭제 참여	○ 개인 또는 집단(부서) 단위로 학생들에게 업무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코칭제를 실시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학생 동아리 상담 또는 지도	○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취·창업 분야, 기술 분야, 학사 행정 민원 분야 등을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학생공모전/경연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 학생활동 지도 실적	○ 학생들의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등 일정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 1회(건)당 2.0점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출력 결과 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확인서 등)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취업(창업) 지도 실적	○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한 실적 - 1회(건)당 1.0점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취업(창업) 확인서 등]				
	□학생 멘토·멘토링 운영 실적	○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 학생 수 1명당 2.0점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학생공모전/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 학생 활동 지도 실적	○ 학생들의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등 일정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 1회(건)당 2.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출력 결과 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확인서 등)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일지 및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공문

당초 안				변경 안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 1개학기 기준(배주 1회이상 15회 기준)					
	☐K-CDP(학생종합역량프로그램)참여 실적	○ K-CDP(학생종합역량)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1개학기이상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2016학년도 부터 시행) — 1회(건)당 15.0점 ※ 학생수, 추진방법 등은 추후 결정	K-CDP센터의 관련 공문 및 일지 또는 결과 보고서				
	☐커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적						
	※ 배점 산출방법 ○ 개인별 배점은 해당부서의 공문,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등 실제 참여한 시간(일)을 기준으로 산정. ○ 배점기준 — 1회(건) : 4시간이하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은 1.0점 인정 ☞ 1일 3회(건) 한도 — 1일 : 4시간이상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은 1.5점 인정 예) 학과 MT 1박2일 경우 : 교직원임장지도로 활동 실적인정 : 2일 3.0점으로 인정함. ○ 배점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내용별 변경 사유

순	변경 내용	변경 사유(교육부 컨설팅)
1	※ 지급계획 p.6 □ <u>교원, 직원 대상별 예산 구분 삭제, 통합</u>	- 교직원에게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동일 원칙 위배
2	※ 지급계획 p.6 □ 연구영역 평가지표 조정 ○ 선택지표 : <u>국내학회 참가 삭제</u> ○ 지정선택지표 : <u>국내학회 참가 연간 2건 20만원 지원 → 실비정산으로 변경</u>	- 실적으로 운영 부적절(국립대 공통으로 지표에서 삭제) - 필요 시 실비정산 방식으로 운영
3	※ 지급계획 p.10 □ 교육영역 평가지표 조정 ○ 공통지표 : <u>강의개선활동 항목의 미달 학점당 1% 감액 평가방식 삭제</u>	- 최소 실적 인정기준으로 부적절(미준수 시에도 기본 금액 지급은 부적절)
4	※ 지급계획 p.12 □ 연구영역 평가지표 조정 ○ 선택지표 : <u>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변경</u>	- 실적 인정 기준 강화
5	※ 지급계획 p.13 □ 연구영역 평가지표 조정 ○ 공통지표 : <u>정책연구과제 내용 상세화</u> (과제 내부공모, 세부사항 설정)	- 기본연구과제 운영 내용처럼 구체화
6	※ 지급계획 p.15 □ 학생지도영역 평가지표 조정 ○ 공통지표 : <u>학생면담 평가방식의 15회 미만 시 회당 1% 금액 감액, 최소 5회 이상 면담 실시 삭제</u>	- 최소 실적 인정기준으로 부적절(미준수 시에도 기본 금액 지급은 부적절)
7	※ 지급계획 p.18 □ [별표1]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 <u>학생지도 유사, 중복 항목 통합</u> ○ <u>야간방법 활동, 교통 또는 주차 지도 등의 항목 삭제</u> ○ <u>취업지도, 현장실습지도 실적과 출장비 이중 인정 불가</u> ○ <u>기타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실적 삭제</u>	-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된 항목 나열로 항목별 실적 인정기준이 자의적 여지 - 일회성, 일상적인 성격의 항목으로 실적 인정 불가 - 학생지도비가 사업비성 성격이므로,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구체적인 예시 없이 단순 나열로 광범위하고 관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삭제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I 관련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

II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1. 목적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영역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 2015학년도에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관련 예산은 모두 포함하되,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및 지정선택지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공통지표(80%) : 학기별 40%내에서 지급
- 선택지표(2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0~20%)
- 지정선택지표

- 영어강의지원비, 지정선택지표(연구영역) :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교재개발비, 학생활동지원비 : 본 계획 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라. 2015학년도는 각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간 계획으로 제출받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은 8월과 익년도 1월에 각각 40%, 학년말에 20%를 지급한다.

마. 선택지표에 대한 실적평가는 4단계(S,A,B,C)로 구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휴직, 파견, 직위해제중인 자(해당 기간)
-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해당 분야 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저점수 이하인 자

3. 실적 평가기준

- 가. 매년도 3월 1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학년말에는 실적인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각 영역별 실적은 해당 부서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실적자료가 없는 항목은 개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4. 담당부서

- 가. 영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자료제출부서에서는 실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 가.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 나. 실적평가지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 다.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 라.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 마.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시행일

- 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은 2015.3.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 포함)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1개 학기 기준 평가기간 예산이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 기본원칙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준수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활동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 계획서의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
- 비용 선지급급에 따른 환수 기준 명시
- K-CDP시스템에 기반한 학생 종합역량 자료 제출(전 영역 반영 가능)

2.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금오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자

○ (지급 제외 대상자)

- 휴가, 휴직, 파견, 신규임용, 직위해제중인 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에 학기별 1월 미만, 연구영역의 경우에는 연 2월 미만인 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7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에 따라 면직된 교직원

○ (지급 제한 대상자)

- 정년퇴직, 명예퇴직 대상 교직원은 퇴직 전 영역별 활동계획서와 영역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영역별 해당 비용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전액(기준액) 일시 지급함
- 연구년제 교수 및 파견 중인 교직원의 경우 강의교재개발을 제외한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 영역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단, 강의교재개발 및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지급)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 (구성) 교무처장(위원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이 외 일반직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활동계획서, 실적 보고서 심사, 개인별 지급액 결정 및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의신청)

- 비용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제기기간 내 이의를 제기한 교직원이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비용 지급내역을 교무처 및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영역별 비용 신청 및 지급 관련 증빙자료는 교무처 및 학생처에서 5년 이상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지급 제한 및 환수

○ (처리방안) 지급 제한 및 환수 처리 방안

구 분	조 치	비 고
휴직 및 징계	- 해당기간 영역별 실적 불인정	·일할, 월할계산 등 지급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 최하등급 부여	·합당한 사유 시 재심의
보고서 미제출	- 선지급분 회수 - 잔여액 미지급	·타 영역 비용 미지급
실적물 허위제출	- 선지급분 전액 환수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전액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 조치

- 활동계획서 제출로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미제출 시
-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없이 본인의 원(願) 또는 중징계(해임, 파면)에 따른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 적발 시
- 동일한 실적물에 대하여 이중 지급된 경우
- **(환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적보고서(실적물)를 제출하지 못한 교직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영역 선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유예 가능함
 -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최대 2개월 연장)
 - 천재지변, 전사·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환수면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환수방안)**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환수금액 완납완료 시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중지
 - 차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서 환수금액 차감

5. 예산 및 교직원 현황

- 예산과목 : 대학회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 총 예 산 : 5,171,549천원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1인당 기준액
교육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지원비	1,130,310	5,500
	선택지표	교육활동지원비	286,465	1,370
	지정선택지표	교재개발비	70,000	
	지정선택지표	영어강의지원비	99,000	
	계(A)	소계	1,585,775	6,870
연구	공통지표	기본연구지원비(기본/정책)	525,655	2,300/1,150
	선택지표	연구활동지원비	125,000	570
	지정선택지표	교내학술연구과제지원비	1,480,200	
		논문게재발표경비지원비	133,600	
		학회참가경비지원	36,000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1인당 기준액
		대외연구과제선정장려금	12,000	
	계(B)	소계	2,312,455	
학생 지도	공통지표	학생지도지원비	657,055	3,200
	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취업,비교과)	164,264	800
	지정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취업비교과외)	452,000	2,000
	계(C)	소계	1,273,319	
합계(A+B+C)			5,171,549	

○ 세부현황

영역	구분	예산액
교육영역	공통지표	1,130,310
	선택+지정선택지표	455,465
연구영역	공통지표	525,655
	선택+지정선택지표	1,786,800
학생지도영역	공통지표	657,055
	선택+지정선택지표	616,264
합계		5,171,549

○ 교직원현황(2015.8.1.자 기준)

구분	교원			직원				합계
인원	총장	전임교원	소계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소계	
	1	217	218	82	26	118	226	444

6.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 심사 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교육영역	교육활동계획서	8월		
	교육활동보고서	1월		
	선택지표이행실적	2월		
	지정선택지표	8월	2월	영어강의지원비 지원지침에 따름
연구영역	연구활동계획서 +기본연구계획서	8월		
	연구활동보고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1월		
	선택지표 이행실적	1월		
	지정선택지표	수시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규정에 따름
학생지도 영역	학생지도활동계획서	8월		
	학생지도활동보고서	1월		
	선택지표이행실적	1월		
	지정선택지표	8월	2월	

7. 지급시기

월별	1학기					2학기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구분					심사 및 지급				실적 보고 서	심사 및 지급	평가 차등 지급
교육					계획서 40%				○	40%	20%
연구					계획서 40%				○	40%	20%
학생 지도					계획서 40%				○	40%	20%

* 활동계획서 : 2015학년도(연간) 계획서를 제출

8. 평가집단

평가영역	평가점수 산출	비교집단	비고
교육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연구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학생지도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9. 기타사항

- 2015학년도는 교원은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단위로 제출하고, 실적 평가는 1,2학기를 합산하며, 직원은 2015-2학기 실적만 인정함
 ※ 직원의 예산 편성은 1개 학기 기준임
- 학생지도 부분을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원 포함)의 공통적인 업무 범위로 인정

IV

201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32.4%	

□ 교육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강의개선 활동비	1,130,310	○ 강의책임시간 준수 ○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 충족시 5,500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286,465	○ 학부강의평가점수 ○ 수업보조자료활용 ○ 학부학생수강인원	○ 실적에 따라 4등급(S,A,B,C) 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지정 선택 지표	교재개발비	70,000	○ 연구년교수	○ 200페이지 이상 시 5,000 ○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시 지급 * [별첨] 교재개발지원기준
	영어강의 지원비	99,000	○ 영어강의지원비 지원 지침에 따름	○ 영어강의지원비 - 3학점 과목 700 - 2학점 과목 500 ○ 교재개발비 : 500
계		1,585,775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의무 제출		교육계획서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교육계획 제출	
		교육실적 보고서	교육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강의개선활동 (책임시수/CQI)	- 책임시수 준수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학사관리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선 택 지 표	① 학부 강의 평가 점수	- 4.5이상 5점, 4.0이상 4.5미만 4점, 3.5이상 4.0 미만 3점, 3.0이상 3.5미만 2점, 2.5이상 3.0미만 1점, 2.5미만 0점	교수지원팀
		② 수업보조자료활용	- 과목당 2점(학점무관) ex) PPT파일	개별 제출
		③ 학부 학생 수강 인원	- 1학점당 평균 수강인원 : 10명 미만 0점, 11~15명 1점, 16~20명 2점, 21~25명 3점, 26~30명 4점, 31명 이상 5점 ※ 평균수강인원 = $\frac{\sum \text{학점} * \text{수강인원}}{\text{총학점}}$	학사관리팀
	지 정 선 택 지 표	교재개발비	○ 지급대상 : 연구년교수 ○ 지급액 : 200페이지 이상 시 5,000천원 ¹⁾ -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 시 지급 * [별첨] 교재개발지원기준	개별 제출
		영어강의지원비	○ 영어강의지원비(학기당) - 3학점 1강좌당 700천원 - 2학점 1강좌당 500천원 ○ 교재개발비 500천원(최초 강의시)	학사관리팀

<적요>

- 책임시수 미달 교원 예외 인정 : 보직교원 책임시수 면제 및 폐강 등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학생 수강인원 : 학부 과목 중 순수 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함
- 선택지표 :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

1) A4용지 기준 200페이지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이하, 쪽번호 삽입, 한글파일 형태, 그림·사진의 지나친 삽입 지양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2점 미만
지급기준	1,644,000 ($\alpha \times 1.2$)	1,370,000 (α)	1,09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8월)	2차평가(2016.1월)	3차평가(2016.2월)
기준금액	6,870,000원		
공통지표	40%내	40%내	20%내
평가근거	○ 교육계획서(2015학년도)	○ 1,2학기 이행 실적	○ 교육실적(2015학년도)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교육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1,2학기 공통지표 달성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	- 1, 2학기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
확인자료	- 교육계획서	- 강의책임시간 준수 - CQI(교과목포트폴리오) 제출(2학기만 포함)	- 강의평가점수 - 수업보조자료활용 실적 - 학부생 수강인원

○ 평가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교육계획서, 교육실적 보고서, 강의개선활동
선택지표	0~20%	① ~ ③ 항목

2. 연구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41.5%	

□ 연구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기본연구 지원비	525,655	○ 기본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 2,300 ○ 정책연구과제 : 5,000~15,000
선택 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내학술 연구과제 지원비	1,480,200	교내일반과제, 중점과제, 지정연구과제, 신임교수 연구비로 구분	○ 일반과제 7,000 ○ 중점과제 10,000 ○ 신임교수 10,000
	논문게재 발표경비 지원비	133,600	연구논문 게재·발표경비	○ 게재 : 등재지 및 저자 수에 따라 60~100,000 ○ 발표 - 국내 100 - 국외 1,000
	국내학회 참가경비 지원비	36,000	국내학회 참가경비	실비 정산
	대외연구 과제선정 장려금	12,000	한국연구재단에 신규과제 (연구비 총액 3천만원 이상) 가 선정된 경우 지원	과제당 300
계		2,312,455		

□ 평가지표

구분	항 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의무 제출	연구계획서 제출시		공통지표, 선택지표, 지정선택지표에 대한 연간 연구활동계획을 제출		개별 제출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실적을 제출		개별 제출
공통 지표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지급		개별 제출
선택 지표	①교외 연구비 수주		기본 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산학협력단 : (기간 중 입력자료)
	②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점/건		
	③저서(전문도서출판)		5점/건		
	④특허(실용신안)등록		3점/건		
	⑤지식(디자인)재산권		2점/건		
	⑥기술이전		50만원당 1점		
지정 선택 지표	다년 과제	교내일반과제	건	700만원	개별 제출
		중점연구과제	건	1,000만원	
		신임교수연구과제	건	1,000만원	
	연구논문 게재경비		건	6~10,000만원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	10만원 (1회 3건까지)	
	국외 학술대회 발표		건	100만원	
	국내 학회 참가		건	실비정산	
	대외 연구과제 선정		건	30만원	

<적요>

- 공통지표 기본연구 : 기존과제 및 교내과제 불가
- 공통지표 정책연구 : 정책과제는 내부 공모절차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선택지표 ②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1점 미만
지급액(원)	684,000 ($\alpha \times 1.2$)	570,000 (α)	45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연구계획서, 연구실적보고서, 기본연구계획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	0~20%	① ~ ⑥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8월)	2차평가 (2016.1월)	3차평가 (2016.2월)
기준금액	2,870,000원		
공통지표	40%내	40% 내	20%내
평가근거	연구계획서 (2015학년도)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후 차등 지급
확인자료	- 연구계획서	- 기본연구결과보고서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3. 학생지도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학생지도 분야	전체 예산의 26.1%	

□ 학생지도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학생면담실적	657,055	○ 학생면담실적	○ 면담실적에 따라 지급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164,264	○ 학생취업활동 ○ 학생비교과활동지원	○ 기준액 : 40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452,000	○ 학생활동지원	○ 1회 기준액 : 80 ○ 지도실적에 따라 지급
계		1,273,319		

□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의무 제출	계획서 제출	-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개별 제출
	보고서 제출	- 학생지도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개별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학생면담 - 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학기)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 입력자료
	선 택	학생취업활동 ① 학생취업지도(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하는 실적) : 건당 1점	취업지원 본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지 표	학생 비교과 활동 지원	②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평가건수당 0.5점	도서관
			③ 독서토론지도: - 지도학생수 11명 이상 3점 - 지도학생수 5~10명 2점 - 지도학생수 1~4명 1점	
			④ 현장실습지도: 건당 1점	현장실습 교육센터
			⑤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실적 : 수상 건당 3점, 참가 건당 1점	기간중 제출자료
	지 정 선 택 지 표	학생활동지원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 참 조 : 1점당 80,000원(최대 25점까지 인정) ※ 2015년도 2학기 기준임(연간 최대 5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기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60%(기준)	하위20%	2점 미만
지급액(원)	480,000 ($\alpha \times 1.2$)	400,000 (α)	320,000 ($\alpha \times 0.8$)	0

- 교직원은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선택 지표로 활용하여 실적으로 인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학생지도활동계획서, 학생지도활동보고서, 학생면담 실적
선택지표	0~20%	① ~ ⑤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8월)	2차평가 (2016.1월)	3차평가 (2016.2월)
기준금액	4,000,000원		
공통지표	40%내	40% 내	20%내
평가근거	학생지도활동계획서 (2015학년도)	학생지도활동보고서 (2015학년도)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학생지도활동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학생지도활동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확인자료	- 활동계획서	- 학생지도활동보고서	- 학생취업지도 -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독서토론지도 - 현장실습지도 - 지도학생의 외부경진 대회 수상 - 학생지도 실적

[별표 1]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지정 선택 과제	☐ 학사상담 또는 지도	○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휴·복학, 자퇴, 제적 등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취·창업 분야, 기술 분야, 학사 행정 민원 분야 등을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	일지 및 결과보고서
	☐ 행사상담 또는 지도	○ 개강/종강, 세미나, 워크숍, 입학식/졸업식, 신입생 OT, 대동제 및 공학제, 성년의 날, 체육대회 등 내부 행사 지도 실적 ○ MT, 수련회, 농활, 국토대장정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여 임장 지도한 실적 ○ 행사 기간 중 학생 보호활동 지도	일지 및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공문
	☐ 현장실습 및 취업(창업) 지도 실적	○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한 실적	일지 및 결과보고서
	☐ 팀 코칭제 및 멘토링 운영 실적	○ 개인 또는 집단(부서) 단위로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코칭제를 실시한 실적 ○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 학생 1명당 2.0점 ※ 1개학기 기준(매주 1회 이상 15회 기준)	일지 및 결과보고서
	☐ 학생 공모전/경연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 학생 활동 지도 실적	○ 학생들의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 1회(건)당 2.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출품 결과 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확인서 등)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일지 및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공문

○ 배점 산출방법

- 개인별 배점은 해당부서의 공문,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등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배점기준 : 별도 점수 표기가 없는 경우 1점이며, MT 및 수련회 임장지도 등 2일 이상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곱하여 산출
- 배점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 수업보조 자료활용	수업보조자료활용에 대한 계획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실적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강의평가 점수 기재
	☐ 수업보조 자료활용	수업보조자료활용에 대한 실적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

1. 지원대상자 : 2015. 3월 현재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2. 교재의 범위 : 전공분야에 한하며, 개발된 교재는 학생의 정규강좌 또는 비정규강좌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원절차
 - 교육영역 활동계획서에 교재개발을 선택하고 개발 내용을 기재
 - 붙임 양식의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후 대상자 확정
4. 교재의 규격
 - A4용지 기준 200매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이하, 쪽번호 삽입, 한글파일 형태, 그림·사진의 지나친 삽입 지양
5. 비용지급
 - 교재개발비 지원 금액은 금5,000,000원으로 한다.
 - 교재개발 비용은 2016.2월말까지 지급하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의무사항
 - 완성된 교육교재는 ISBN을 부여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된 교재는 전공분야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에 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7.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교육교재 5부, 최종결과보고서(별지 2호)를 교무처에 제출
 - 연구년 승인 교수의 연구년 기간에 따른 결과물 제출 시기

연구년기간	교재개발기간	교재개발비(천원)	지급일	교재제출기한	비고
2014.9~2015.8	2015.9~2016.1	5,000	2016.2.	2016.1.31. 단, 2015년 에는 완성본 제출시 기를 6개월까지 유예	유예신청시 중간보고서 제출
2015.3~2016.2	2015.9~2016.1	5,000	2016.2		
2015.9~2016.8	2015.9~2016.1	5,000	2016.2		
2016.3~2017.2	대상아님				2016년 신청

8. 심사
 - 개발된 교재는 규격, 전공분야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교재개발의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 별 첨

[별지 1호]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2호]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별지 1호]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관리번호	
교 재 명			관련 강의명	
개발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급	
개 발 경 비	원	개발기간	(개월)	
본인은 2015년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교재개발 수행 계획서 1부. 2015 년 월 일 개 발 책 임 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수행계획서

1. 교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4. 활용방안

예: 000학부(과)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000과목의 강의교재로 활용

5. 추진 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6. 소요예산

지출항목	금액 (원)	산출내역
교재집필비	5,000,000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교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2호]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관리번호	
교 재 명			관련 강의명	
개발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급	
개 발 경 비	원	개발기간	(개월)	
본인은 2015년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결과보고서 1부. 첨부1. 개발 교과목 제본 5부 20 년 월 일 개 발 책 임 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결과보고서

1. 교재개발의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
-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교재”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계획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계획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 택 지 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계획	
	☐ 특허(실용신안) 등록	예) 특허 몇 건 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계획서를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제출자 : (소속) 2015년 월 일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기본연구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기타 사항	

<붙임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연구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기간	2015. . . ~ 2015. . .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타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실적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실적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택 지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결과 제출	
	☐ 특허(실용신안) 등록	예) 특허 몇 건 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실적을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결과보고서 : 별첨>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결과 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 작성요령 안내

1. 연구내용 및 결과는 3쪽 내외로 간략히 정리
2. 각 항목의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기술
3. 작성후에는 작성요령 안내 박스를 제거 후 제출

I.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개요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2. 국내외 연구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학문 또는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6. 연구결과물

※ 여타 논문집의 논문 형태로 작성 예) 제목, 저자, 초록, 본문내용, 참고자료

<붙임2>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연구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참고 및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계획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계획을 작성
	☐ 전국규모 이상 경진대회 수상	지도학생 전국단위 경진대회 지도 계획을 작성
지정선택 지표	☐ 학생지도	학생 지도 운영 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실적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실적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실적을 작성
	☐ 전국규모 이상 경진대회 수상	학생 경진대회 수상실적을 작성
	☐ 학생지도	학생 지도 운영 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IV

행정사항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심의사항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업무 분담

부서명	주요업무	세부업무
교무처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 지급 업무 총괄 - 비용 지급 관련 대내외 업무 조정	- 교육부 공문 접수 및 보고 - 비용 지급규정 제·개정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정위원회 심의(안전 상정)
	전임교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학생처	직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K-CDP 센터	K-CDP시스템 활용	- K-CDP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직원은 학생 진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사무국 (재정정책팀)	예·결산 및 예산배정	- 비용에 대한 예산 및 결산(공고) - 재정위원회 심의 - 예산배정
정보전산원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교원업적평가 자료 연계 · K-CDP센터 자료 연계 · 기타 개인별 실적자료 입력 프로그램
종합학사 행정실	전임교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각 부서	직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회비 수입의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기타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 부족분 계상
- 당초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예산 파악 후 반영

II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액(B)	증감 (C=B-A)	비고
본예산	26,140,068	27,466,215	1,326,147	○ 수업료 등 추가세입분(626,147천원) ○ 산단전입금(700,000천원)
수입대체	6,848,691	6,854,684	5,993	○ 수입대체부서 세입증감분
보조금	590,200	1,024,900	434,700	○ 국가근로장학금(434,700천원)
계	33,578,959	35,345,799	1,766,840	

☐ 세입총괄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액(B)	증감 (C=B-A)
관	항	목			
총 계			33,578,959	35,345,799	1,766,840
일반예산			26,730,268	28,491,115	1,760,847
자체수입금			26,730,268	28,491,115	1,760,847
	교육활동수입		24,819,358	25,445,505	626,147
		입학금	286,446	326,189	39,743
		수업료	24,532,912	25,119,316	586,404

예산과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액(B)	증감 (C=B-A)
관	항	목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40,710	1,340,710	700,000
		산학협력단회계전입금	640,710	1,340,710	700,000
		이자수입	80,000	80,000	0
		예금이자수입	80,000	80,000	0
		그 밖의 수입	1,190,200	1,624,900	434,700
		그밖의지원금	590,200	1,024,900	434,700
		잡수입	600,000	600,000	0
		수입대체경비	6,848,691	6,854,684	5,993
		최고경영자과정	279,380	273,964	△5,416
		계절수업	240,000	240,000	0
		졸업자격특별시험	8,000	8,000	0
		통학버스운영	1,000,000	1,000,000	0
		학생식당운영	1,383,480	1,383,480	0
		국제교류교육원	260,840	260,840	0
		평생교육원	340,800	438,200	97,400
		생활관	3,194,691	2,919,700	△274,991
		공동실험실습관	116,000	202,000	86,000
		골프학습관	25,500	57,000	31,500
		주차관리	0	30,500	30,500
		입시관리	0	41,000	41,000

○ 본예산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 (A)	세입예상액 (B)	증감액 (C=B-A)	비 고
입학금	286,446	326,189	39,743	○ 학기 초과자 입학금 증
수업료	24,532,912	25,119,316	586,404	○ 학기 초과자 수업료 증
산단회계전입금	640,710	1,340,710	700,000	○ 산단 공공요금,용역비 전입금(413,000천원) ○ 산단 연구개발비 전입금(287,000천원)
예금이자수입	80,000	80,000	0	
잡수입	600,000	600,000	0	○ 대학회계잡수입 - 기타잡수입 감(△50,000천원) - 기성회계청산액 증(50,000천원)
계	26,140,068	27,466,215	1,326,147	

※ 보조금(434,700천원) 및 수입대체(5,993천원)증감액 제외

□ 세출총괄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액(B)	증감 (C=B-A)
관	항	목			
총계(본예산+보조금+수입대체)			33,578,959	35,345,799	1,766,840
계(본예산+보조금)			26,730,268	28,491,115	1,760,847
인적경비			7,469,391	7,510,136	40,745
	인건비		5,620,493	5,600,198	△20,295
		공무원인건비	3,371,903	3,471,903	100,000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2,225,471	2,105,176	△120,295
		일용임금	23,119	23,119	0
	복리후생비		450,448	413,488	△36,960
		퇴직급여	210,484	195,484	△15,000
		복리후생비	239,964	218,004	△21,960
	실비변상인적경비		91,350	79,200	△12,150
		그밖의실비변상인적경비	91,350	79,200	△12,150
	강의료		899,800	1,049,800	150,000
		강의료	899,800	1,049,800	150,000
	법정고용부담금		407,300	367,450	△39,850
		부담금	407,300	367,450	△39,850
교육연구학생지도및장학비			10,842,834	11,587,076	744,242
	장학금		4,854,605	5,291,847	437,242
		장학금	4,854,605	5,291,847	437,242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등		5,441,549	5,728,549	287,000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	4,884,549	5,171,549	287,000
		연구지원대응사업비	557,000	557,000	0
	학생활동지원비		546,680	566,680	20,000
		학생활동지원비	546,680	566,680	20,000
운영비			5,954,994	6,887,061	932,067
	학교운영비		5,954,994	6,887,061	932,067
		일반수용비	925,453	954,898	29,445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액(B)	증감 (C=B-A)
관	항	목			
		공공요금및제세	796,476	1,019,583	223,107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31,700	31,700	0
		지급보험료	70,162	70,562	400
		지급임차료	87,240	117,940	30,700
		수선유지비	441,259	448,179	6,920
		급량비	103,200	103,200	0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442,380	431,430	△10,950
		재료비	249,200	249,200	0
		용역비	1,456,234	2,128,979	672,745
		과운영비	11,160	11,160	0
		여비교통비	241,620	247,620	6,000
		업무추진비	245,520	263,220	17,700
		연구개발비	264,000	237,000	△27,000
		보전금	10,400	8,400	△2,000
		그밖의운영비	578,990	563,990	△15,000
자산적경비			2,363,049	2,436,842	73,793
	건설비		1,337,710	1,356,710	19,000
		건설비	1,337,710	1,356,710	19,000
	자산취득비		1,025,339	1,080,132	54,793
		유형자산취득비	434,639	502,932	68,293
		무형자산취득비	590,700	577,200	△13,500
예비비및기타			100,000	70,000	△30,000
	예비비및기타		100,000	70,000	△30,000
		예비비	0	0	0
		반환금	100,000	70,000	△30,000
수입대체경비			6,848,691	6,854,684	5,993
	수입대체경비		6,848,691	6,854,684	5,993

□ 세출예산 세부내역

○ 추가세입예산 증감반영 사업내역(추가세입액 : 1,326,14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목)	예산액			비고
		당초예산 (A)	증액 (B)	최종예산 (C=A+B)	
1	강의료	869,900	150,000	1,019,900	시간,초과강사료 국고부족분
2	공공요금및제세	527,958	265,247	793,205	전기요금 부족분
3	용역비	750,089	623,900	1,373,989	청소경비용역료 부족분
4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	1,193,200	287,000	1,480,200	대학학술연구비 지원
계		3,341,147	1,326,147	4,667,294	

○ 자체 예산 증감 조정사업 내역

- 불용 및 감액 조정 사업(△428,27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목)	예산액			비고
			당초예산 (A)	감액 (B)	최종예산 (C=A+B)	
1	교무처기본사업	일반수용비	22,696	△5,000	17,696	교무처 소모품비
2	기획처기본사업	일반수용비(광고선전비)	326,750	△13,695	313,055	기획처 광고선전비 등
3	대학정책과제	실비변상인적경비	9,000	△7,200	1,800	대학정책과제 위원회수당
4	대외재정지원	실비변상인적경비	5,000	△1,800	3,200	대외재정지원사업 위원회수당
5	명예홍보대사	실비변상인적경비	4,250	△4,250	0	명예홍보대사 위원회 수당
		업무추진비	1,250	△400	850	집행 잔액 자체조정
6	정책자문단	실비변상인적경비	5,400	△1,900	3,500	집행 잔액 자체조정
7	명예kit선정	일반수용비	1,200	△540	660	집행 잔액 자체조정
		보전금	2,000	△2,000	0	집행 잔액 자체조정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목)	예산액			비고
			당초예산 (A)	감액 (B)	최종예산 (C=A+B)	
8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262,863	△92,590	170,273	방호원, 특수직 등 불용액
9	대학회계직원 연가보상비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87,705	△29,235	58,470	실제 추산 불용
10	대학회계직원 퇴직급여	퇴직급여	210,484	△15,000	195,484	실제 추산 불용
11	직원체육대회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20,500	△10,250	10,250	행사종료 불용액
12	맞춤형복지비	복리후생비	86,200	△18,000	68,200	실제 추산 불용
13	일숙직비	일숙직비	14,815	△3,960	10,855	실제 추산 불용
14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407,300	△40,000	367,300	실제 추산 불용
15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연구개발비	27,000	△27,000	0	2016회계연도에 사업 실시
16	복식회계프로그램구축	무형자산취득비	30,000	△30,000	0	예산과목 변경(→유형자산취득비)
17	자퇴자반환금	반환금	100,000	△30,000	70,000	실제 추산 불용
18	산지복구비	공공요금(각종부담금)	20,000	△19,000	1,000	사업종료 잔액
19	영덕연수원 소방감리	건설비(감리비)	18,000	△4,052	13,948	사업종료 잔액
20	입시관련교사 설명회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24,400	△4,000	20,400	사업종료 잔액
21	입시홍보활동비	그밖의운영비	49,800	△15,000	34,800	여비교통비 실비지원으로 감액
22	교육전산망이용료	통신비	137,000	△45,000	92,000	실제 추산 불용
23	공학교육인증	각종부담금	18,200	△1,400	16,800	공학교육 인증유지비 불용
		여비교통비	3,000	△2,000	1,000	공학교육인증 출장비 불용
24	건축학교육인증	각종부담금	25,000	△5,000	20,000	사업종료 잔액
계			1,919,813	△428,272	1,491,541	

- 신규 및 증액 조정 사업(428,27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목)	예산액				비고
			당초예산 (A)	요구액 (B)	반영액 (C)	최종예산 (D=A+C)	
1	대학원기본	지급수수료	1,980	5,000	5,000	6,980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구입
2		소모품비	1,000	5,000	5,000	6,000	석박사 학위복 구입
3	교무처기본	업무추진비	18,600	2,000	1,000	19,600	교무처 위원회 회의비
4	학생처기본	장학금	3,597,458	2,542	2,542	3,600,000	국가2유형 장학금 대응
5		학생활동지원비	15,000	30,000	20,000	35,000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6		차량임차료	65,240	20,000	20,000	85,240	통학버스임차료
7		업무추진비	4,500	2,500	1,500	6,000	학사관리업무추진
8	기획협력처기본	일반수용비(소모품비)	10,200	1,200	1,200	11,400	사무용품비
9		일반수용비(도서인쇄비)	8,400	3,200	3,200	11,600	4개년 업무 보고서 인쇄 등
10		자산취득비	0	3,000	3,000	3,000	홍보서비스표 갱신등록료
11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1,600	1,900	1,900	3,500	협의회 참가비 등
12		업무추진비	4,800	8,000	4,000	8,800	대외기관 업무추진
13	대학정책과제지원	업무추진비	800	2,000	1,000	1,800	기숙문화 추진 T/F회의
14	대학기관평가인증	일반수용비(수수료)	0	4,000	4,000	4,000	참가수수료
15	공무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3,371,903	100,000	100,000	3,471,903	국고 부족분 반영
16	지급임차료	차량임차료	9,000	6,000	6,000	15,000	통학버스, 공용차량렌트료
17	사무국기본	수선유지비(잡기비품)	8,000	6,000	6,000	14,000	각종명패, 안내판 설치
18		용역비	254,380	15,845	15,845	270,225	무인기계경비용역료
19		여비교통비	85,600	5,000	5,000	91,600	학교공통여비 부족액
20	최경과정추진	업무추진비	0	5,000	5,000	5,000	최경과정 업무추진
21	재정위원회추진	업무추진비	1,000	5,000	5,000	6,000	재정위원회 회의운영
22	복식회계프로그램구입	유형자산취득비	0	30,000	30,000	30,000	복식회계프로그램구입 과목변경
23	공용차량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0	13,500	13,500	13,500	공용차량 장기렌탈 보증금
24	도시가스요금	공공요금	208,082	28,260	28,260	236,342	도시가스요금
25	보수공사설계비	건설비(설계비)	8,000	7,000	7,000	15,000	수시보수공사 설계비
26	계약수수료	건설비(시설부대비)	72,000	16,052	16,052	88,052	계약수수료 부족액 증
27	입학박람회	일반수용비(소모품비)	13,000	12,000	12,000	25,000	서울지역 입학박람회 추가소요
28	입학승합차임차	지급임차료	0	9,000	4,000	4,000	입학홍보용 승합차량 임차료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목)	예산액				비고
			당초예산 (A)	요구액 (B)	반영액 (C)	최종예산 (D=A+C)	
29	입시홍보여비	여비교통비	5,500	3,000	3,000	8,500	홍보활동비 여비실비지원
30	디지털신문구독	지급수수료	0	5,280	5,280	5,280	디지털신문구독료
31	전산운영용역비	용역비	443,265	33,000	33,000	476,265	정보전산원 전산용역비
32	정기간행구독료	일반수용비(도서인쇄비)	0	2,000	2,000	2,000	정기간행물 구독료(신문) 증
33	공학교육인증사업	실비변상인적경비	0	3,000	3,000	3,000	자체평가보고서 집필비
34		일반수용비(도서인쇄비)	0	200	200	200	자체평가보고서 인쇄비
35		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	500	300	300	800	자체평가보고 집필회의
36	BTL3차 신축비품	자산취득비	0	44,093	36,493	36,493	BTL3차 신축비품 구입비
37	평생교육원대응 투자	인건비	0	1,530	1,530	1,53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38		부담금	0	150	150	15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39		일반수용비	0	10,500	10,500	10,50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40		지급보험료	0	400	400	40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41		지급임차료	0	700	700	70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42		수선유지비	0	920	920	92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43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0	1,400	1,400	1,40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44		업무추진비	0	600	600	60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45		유형자산취득비	0	1,800	1,800	1,800	평생교육진흥원 대응투자
계			8,209,808	457,872	428,272	8,639,080	

- 예산 미반영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목)	예산액				비고
			당초예산 (A)	요구액 (B)	반영액 (C)	최종예산 (D=A+C)	
1	멀티미디어강의실 유지보수	수선유지비	41,000	10,000	0	41,000	사무국 공통수선유지비로 집행
2	K-CDP센터운영	업무추진비	0	2,520	0	0	사업타당성 평가 후 2016년 본예산에 재검토
3		연구개발비	0	50,000	0	0	
4	사무국 기타회의비	업무추진비	6,000	5,000	0	6,000	재원부족 미반영
5	연구논문게재·발표경비	연구개발비	133,600	100,000	0	133,600	재원부족 미반영, 산단에서 필요시 자체반영
6	연구과제신청장려금	연구개발비	12,000	6,000	0	12,000	
7	우수연구그룹지원비(비융합)	연구개발비	130,000	40,000	0	130,000	
8	도서관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0	7,050	0	0	연말 자산취득비 잔액 확인 후 집행검토
9	멀티미디어 장비교체(기계공학)	자산취득비	0	25,399	0	0	연말 자산취득비 잔액 확인 후 집행검토
계			322,600	220,570	0	322,600	

2. 회의 녹취록 전문

2015년도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본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2015년11월26일(목) 오전 11시 00시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학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학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11시04분 개의)

1. 201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 **간사 배호근**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간사 배호근입니다. 재정위원회 위원 15분 중 12분이 참석하여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 운영 규정 제8조 제5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를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채창현** 오늘 심의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제1호 안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제2호 안건 2015학년도 제2회 대학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호 안건 2016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입니다.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부여받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가능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간사가 부탁하였다시피 꼭 마이크를 켜시고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1호 안건은 지난 8월과 9월에 교육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현재 변경안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교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교무처장 이재원입니다.

우선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부에 컨설팅을 한 4차례 받으면서 그때마다 이 계획안이 이제 저

히는 저희 학교에서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을 때 마다 재정위원회를 열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컨설팅이 완전히 끝난 지금에서야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저희는 교원과 직원을 예산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부컨설팅에서 교원과 직원을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하면 안 된다하는 그러한 컨설팅결과에 따라서 직원의 공통지표에 들어있는 2,565만 5,000원 그리고 학생지도 선택 및 지정선택지표에 들어있는 4억 5,200만원 이것을 교원과 합쳐서 변경 안이 연구에서 공통지표에 5억 2,500만원 정도 그리고 학생지도에 선택플러스 지정선택지표가 6억 1,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영역에서요. 당초 안에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택지표 7번과 지정선택지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내학회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묶여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학교에서 국내학회참가는 한 건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2건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20만원 지급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학회참가를 3회차부터는 선택지표로 집어넣어가지고 점수를 건당 1점씩 부여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은 결과 단순히 국내학회 참가하는 것만 가지고 점수를 준다거나 10만원씩 주는 것은 안 된다.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는 그러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선택지표에 국내학회참가 7번 항목은 없어지고요. 국내학회참가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영역에 보면요. 공통지표에 책임시수 준수 그리고 CQI제출이 있는 데요. 책임시수준수에 이제 미달 시 1학점 당 기준액이 1%씩 감액 그리고 CQI에 대해서도 미달 시 1%씩 기준액의 1%씩 감액 이렇게 우리가 당초 안에는 들어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공통지표 1학기 내용에 대해서요. 미달 시 1%씩 감액한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시수준수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내용이고 CQI교과목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것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달 시 1학

점 당 1%씩 감액하는 내용을 삭제해야지 된다. 그래서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지표로 1학기에는 책임시수 이행률만 평가를 한다했는데요. 이 내용도 1학기, 2학기 통합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영역의 선택지표7 국내학기참가는 2회까지는 지정선택에서 인정하고 3회 차부터는 선택지표에서 인정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부문에 대해서 저희는 공통지표에 정책연구를 뒀었는데 정책과제는 내부공모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되고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면담에 대해서도요. 5페이지입니다. 공통지표에 15회 미만 시 1회당 1%씩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학기당 최소 5회 이상 학생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했는데요. 컨설팅 받은 결과 1회당 16,000원씩 감액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소 5회라고 한다면 5회만 해도 144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5회 미만 시 1회당 1%씩 금액감액 그리고 다만 학기당 최소 5회 이상 학생면담실시를 삭제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변경안은 학생면담 학기당 15회 이상 일 때 1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한편 별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학생지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직원 분들을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별려져있다 하는 그러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통합해 가지고 간단하게 운영을 해라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주어져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별표를 변경하는 거와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서부터는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교무처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호 위원** 구정호입니다. 한 가지 여쭙 사항은 이제 국내학회참가비를 저희가 실비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책제로 횡수를 제한하면서 20만원으로 했지만 바뀌면서 실비지원을 하면 무슨 횡수의 제한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이재원 위원** 예. 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컨설팅을 받을 때에 이렇게 변

경을 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성회계에서 지급을 할 때에는 교육부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계에서 지급되었던 과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라고 컨설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게 지금은 대학회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대학회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그 횟수에 대해서는 무관하다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연구영역에서 저희가 기준을 직원하고 같이 합치면서 교직원합치면서 연구분의 공통지표로 2가지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과제 하나는 정책연구과제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 기준지급액을 보시면 정책연구과제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예요.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1인당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과제금액은 115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는 총액 개념 같아 보이고 하나는 단위 개념 같아요.

○ **이재원 위원** 14페이지에 있는 비용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1인당 11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 1인당이 아니라 과제당 115만원 이고요. 그러면 5명이 하게 되면 1인당 십 몇 만 원 20만원 받고 과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제당 그렇게 늘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허락을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최초 안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교수는 연구를 개인과제로 지금 기본 과제보 수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분들은 정책 과제로 해 가지고 개인당 1인 1과제가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이재원 위원** 예.

○ **위원장 채창현** 앞으로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구 위원님

○ **정연구 위원** 예. 정연구 위원입니다. 교육부컨

설팅을 통해서 여러 번 변경된 내용이 공문을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요. 혹시 공지된 내용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 **이재원 위원**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계획은 2015년도 계획인데 2016년도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이 계획안이 그대로 거의 같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재원 위원** 지금 현재 공지가 되어 있는 지급계획안은 2015년도용입니다. 이제 2016년도용은 별도로 계획지급안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겨울 안으로 해야 됩니다.

○ **정연구 위원** 3월1일전.

○ **이재원 위원** 예.

○ **정연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 최종적으로 공표하시기전에 체크 좀 하셔서 그런 부분.

○ **이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연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전원 찬성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채창현** 제2호 안건인 2015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께의 제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배효근 위원** 2015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은 학생등록금 추가수입분하고 산단회계전입금 그리고 국가근로장학금 세입증가분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과목의 과부족 예산을 증감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35억 7,890만원에서 17억 6,680만원이 증가된 353억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입증가분 13억 2,620

만원은 학생등록금 수입증가 6억 2,620만원과 산단회계전입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단회계전입금 7억원은 청소경비 용역료에 4억 1,3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2억 8,700만원을 지정하여 전입하였습니다.

다음 수입대체경비 590만원은 최고 경영자과정 평생교육원 등 수입대체경비부서의 세입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대체부서별 세입증감분은 49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대체경비에 최고 경영자과정 540만원 감액 평생교육원 9,740만원 증액, 생활관 2억 7,49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공동실험실습관 8,600만원, 골프학습관 3,150만원, 주차관리 3,050만원, 입시관리 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증가분 4억 3,470만원은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 근로장학금은 대학회계에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세입증가분 13억 2,61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편성의 강사료의 1억 5,000만원, 공공요금의 2억 6,520만원, 용역료에 6억 2,390만원 대학학술연구비에 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증감편성내역입니다.

회의자료 52페이지에 세출예산불용 및 감액예산 4억 2,820만원을 회의자료 53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금액을 신규 및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추경예산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된 사업은 56페이지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유롭게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예산요구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가 작아서 굳이 소위원회로 안 넘겨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근 총무과장님.

○ **배효근 위원** 우리 산업대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빨리 가셔야 하기 때문에 회의자료 보시면 6쪽에 보시면 최고 경영자과정 경조사비 지원업무부족액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반영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위원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6쪽입니다. 6쪽에 업무추진비 회의비에 보면 최고 경영자과정.

최고 경영자과정업무추진비가 부족액이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상대위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먼저 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구정호 위원** 최경과정에 지난 번 저희 회의했을 때 여기 보시면 수입내역에서 보시면 여기 예산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총괄에 보시면 수입대체경비 쪽에 최경과정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약 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대체경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경비성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수입이 줄면서 지출은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회의를 했을 때 분명히 최경과정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었던 이유는 어떤 저희의 개인적인 이유로 삭감을 했었던 사항도 아니고 학교에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이 부분이 반영된 거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 **배효근 위원** 지금 저번 1차 추경예산에서 최경과정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공통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공공요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공공요금 나오는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출해야 할 것을 수입대체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 알다시피 이제 최경에서는 경조사비를 지원해야지만 어떤 우리 대학에 발전

기금이나 모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기관장만 경조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총장님 명의로 경조사비가 지출되도록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추가경정이 되는 부분이 다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기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출하시는 그런 경조사비용으로 활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효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산업대학원장** 부서장의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산업대학원장 이재준입니다. 그 세입예산이 541만원정도 줄어드는 것은 1학기에 들어온 원생들이 2학기에 2명이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 등록금에 대한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말씀하신 대로 법규사항전체우리대학의 총장님만 경조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최종에서 했었거든요. 법상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해서 공공요금을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총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계산해서 저희가 오너들의 경조사활동의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변화는 없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채창현**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 **구정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는 어차피 올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겠지만 내년도 부분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지금 질문하신 게 업무추진비 전체를 말씀하신겁니까? 아니면 최경자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신겁니까?

○ **배효근 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최경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원래 같이 어떤 공공요금을 금액만큼 편성을 하고 수입대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서 최경과정분을 편성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학회계에 박서는 어떤 다른 부담액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되니까 부담은 최경에서는 500만원만큼을 공공요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어떤 본예산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정연구 위원님.

○ **정연구 위원** 조금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대학재정회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자체수입금이라는 관이 있고 그 관에 실제로 보면 관련법령 및 규정 거기에 시행규칙을 보시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요. 거기 자체수입금이라는 한 관이 있는데 그 자체수입금관에 쪽 뒤에 18페이지 보시면 기숙사사용료 또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제출받은 회의 자료에는 수입대체경비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배효근 위원** 예. 배효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에는 전체 관항목 전체 예산과목을 크게 구분해서 국가 및 17페이지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1번하고 2번 자체수입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놔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 수입대체든 수입대체가 아니든, 전체적으로 포괄해 놓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경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수입에서 운영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다 본예산과 수입대체 구분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나면 생활관수입이 10억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12억도 쓸 수 있고 또 아니면 최경과정은 총수입이 50억인데 60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 들어온 만큼만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대체서 세입은 이렇게 예산과목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학생들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해서 회계가 운영되는 거고 생활관은 학생들의 생활관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대학도 절반이라든지 생활관이라든지 최경과정은 예산을 본예산과 수입대체를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 뒤에 최경과정이든, 평생교육원이든 수업료는 다 우리 재정회계예산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영원칙이 이거는 대체경비니까 수입한 것만 수입예산 이거만큼만 써라 이거지, 우리가 다 통괄하는 데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경 과정에 대한 예산자체를 심의하는 것도 그 예산이 우리전입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고 단지 원칙이 너네 들어온 수입만큼만 지출을 해라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죠.

○ 정연구 위원 수입대비지출 그 부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입대체경비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별표내용은 전체를 자체수입금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목적의 위반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다 별도의 예산이 아닌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분리해서 쪽 하셔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 배효근 위원 예. 문제는 그렇게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이어서 잠깐 하나만 이거는 수입대체경비가 그대로 증액된 부분이 경직성으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 항목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고요. 입시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것 학생들이 내는 원서대금이 입시관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금액은 4,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원서대금낸 게 그대로 사용됐는데 대체경비에는 한번 예를 들어서 4,100만원이 학생들의 원서활동에 그대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 배효근 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입시경비가 원래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도 지금 회계중간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대학회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시경비 이거는 학생들이 전형료인데 4,1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회계중간에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입시경비가 아까 그 우리 구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전형료이기때문에 전형료 받은만큼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입시 전형료는 돈이 남으면은 학생들한테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로 분리해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반환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채창현 제가 판단하기로는 입시경비는

궁금해서 여쭙본 것 같고요. 최경과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구정호 위원 최경과정 그것만 의견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 위원장 채창현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호 위원 이것도 전체 세출 총괄표를 주셔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억을 잘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세출항목 중에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연구개발비가 지난번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잘 못 기억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연구개발비성격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했던 논문지도 경비나 이런 사항들이었으면 이거는 분명히 교육 연구 활동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배효근 위원 예. 배효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산단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전입금 2억 8,700만원은 교수님들이 지급하는 연구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먼저 별개의 사항이고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대해서는 산단에서 한번설명을 해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태구 팀장 예. 사무국 강태구입니다. 지금 산단에서 담당팀장님이 오늘 회의 때문에 못 오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2억을 삭감을 해서 산학협력단 이번에 연구과제 TFT팀 운영하면서 거기서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정도 규모로 산단에서 간접비로서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고 다음부터 줄이고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러면 산단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과제랑 연결을 하시는 건지 뭔지 말씀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저만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사항인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설명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32쪽에 보면 과제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추가로 과제수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강태구 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한 부분의 부족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이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천 위원** 이희천입니다. 저희들이 산단에서 연구 교내연구과제비입니다. 크게 큰 턴으로 보면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 요구할 때 루틴하게 평균 몇 과제 지정연구과제 신입교수장려과제 작년 과제해서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정도 약 150과제에 금액얼마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기성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해서 그때 아마 2억 6,000만원인가를 재원이 부족하게 배정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나서 올해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첨에 예상했던 대로 돈이 부족하게 된거죠. 그 돈을 산단에서 교수님들이 신청한 과제를 드롭을 안 시키고 이번에는 100% 수용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2억 6,000만원을 산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이제 이쪽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에 연구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과제수가 다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의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넣어놓으신 금액이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 **위원장 채창현**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재원 위원** 예. 이재원입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연구 분야에 포함이 되어져있는 것은 부족분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구정호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상태로 빠진 거라고 하면 여기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추경예산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여기 연구개발비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강태구 팀장** 여기에 지금 이 금액이 교육연구해서 지도비용금액으로 2억 8,700만원이 플러스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 **이재원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가야지 될 금액

입니다.

○ **강태구 팀장** 이거는 지금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열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에 2억 8,700만원이 들어갑니다.

○ **구정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냐면 일단 50페이지에 세출총괄내역이 50페이지 51페이지로 쪽 합쳐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 여기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여기 연구지원대응금액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뒤에 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던 사항인거고요. 그렇지 여기에 반영이 안됐으면 여기다 플러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 **이재원 위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금액은 2억 8,000만원 이 금액은 일반과제하고 그리고 교육연구비가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연구비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되는 금액만큼 이 교육연구비에서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 **강태구 팀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산단에서 온게 연구개발비로 와서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교육학생지도비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이견 뭐고 저견 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이 그렇게 납득이 돼서 하지만 다음번에 하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분류, 분류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채창현** 저도 질문 한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1호 안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제1호 안건을 재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2억 8,700만원이 안 들어갔다잖아요. 계상이 안됐다면서요.

○ **이재원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럼 순서를 바꿨어야 했는데.

○ **이재원 위원** 맞습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올해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부처간에 상호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산단하고 저희 교무처하고 저희 호흡을 맞춰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제2호 안건이 심의의결이 되면 다시 제1호 안건을 재심의해서 2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맞겠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질문해서 죄송하네요. 일단은 이건 세출예산세부내역에 초과강사료를 거기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 있는 최종예산금액과 보시면 강의료 공공요금 용역비 마찬가지로요. 이제 앞에 있는 가장 크게 하면 총괄세출표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52페이지에 있는 첫번째 테이블과요 그다음에 50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각각 세부내역을 매칭해 보시면 됩니다. 52페이지에는 세부내역에 첫 번째 예를 들면 강의료를 보시면 됩니다. 강의료를 보시면 당초예산이 8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50페이지에 강의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당초예산이 8억 6,000만원입니다. 이 모든 항목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 **강태구 팀장**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라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이번에 추경 변경되는 부분만 52쪽부터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것은 다른 부서예산까지 총괄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거고 그렇습니다.

○ **이재원 위원** 예. 교무처장 이재원입니다. 그 차이가 이제 한 3,000만원 정도 납니다. 그 이유는 순수 강의료 그러니까 우리 교무처에서 강사선생님들께 순수 강의료는 8억 그러니까 3,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8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페이지에 있는 8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차이는 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강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8억 6,9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무처에서 강사료를 의미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면 위원님들 보시면 아무래도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 **구정호 위원** 또 추가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래 52페이지라든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급임차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뭘 지급임차료로 계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추경하는 금액의 한 1억 이상으로 되게 일단은 증감상황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저희 학교가 이렇게 지급임차료를 많이 내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태구 팀장** 그거는 지금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대구통학버스부족분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총장님 차량 1호 차량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교육부의 차량교체승인해서 어제 어제승인이 났습니다. 그거 관련 임차료 렌트하는 비용 1,000만원입니다.

○ **구정호 위원** 차량은 수입대체경비로 다 지급이 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량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통학버스 이런 개념.

○ **방대석 위원** 원래 거기 통학버스는 수입대체경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들어온 수입금액에 대해서 지분을 되는데 우리가 거기 수입통학버스요금을 산정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많게 잡는데 주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훨씬 더 많이 거주를 하고 버스 운임료가 거기한 작년보다 15,000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많이 조정을 했지만 거기 입찰에서 유찰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싸게 요구했지만 싸게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업체들이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임료도 인상되고 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 통학버스요금이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기 때문에 노선도 변경하고 편수도 줄여서 적자분을 많이 감소시켰지만 그래도 2,000만원 정도는 더 이상 적자분을 우리가 거기에 노선을 더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버스횟수를 더 줄이게 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대학회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2,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거기에 수입대체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추경예산을 우리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 **구정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략 다 여쭙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예산증감항목에서는 특히 세출부분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각각 성격별로 나와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본 예산편성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부족하니까 당연히 요청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재정위원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보면 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몇 번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 예산 쓰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3월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니까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저희가 없는 살림이라고 하시지만 항상 불가피하게 한 부분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정위원회 지금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 보면 올2월까지 소진해야할 금액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정위원회를 하시면서 업무추진비가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잘 일단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효근 위원** 배효근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회 회의비 500만원은 지금부터 2월말까지가 아니고 그전에 재정위원회 최초회의부터 해서 한 부분을 500만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재정위원회 매번 할 때 마다 전부 다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남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500만원편성을 했습니다.

○ **구정호 위원** 제 느낌에는 그냥 현실적인 금액인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배효근 위원** 보통 1회할 때 30~40만원씩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 **구정호 위원** 30~40만원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10번은.

○ **배효근 위원** 앞으로 회의가 몇 번 또 할지 그전에 한거하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구위원님 질문사항 끝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효근 위원** 그러면 구정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의자료 54쪽을 보시면 신규 및 증액조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채창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전체로 포괄하신 겁니까? 그 정도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구정호 위원** 계시는 위원님들이.

○ **배효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다시 우리가 회의 끝나고 공문을 보내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너무 증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좋은 의견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궁금한 사항인걸로 설명이 다 되셨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견은 없으십니까?

제2호 안건이 2015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원찬성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지적한대로 다시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및학술지도비용지급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산단에서 전입 된 대학학술연구비지원 2억 8,700만원이 포함된 새로운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원** 없습니다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지급계획 재상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원 찬성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위원장 채창현** 다음은 제 3호 안건인 2016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배효근 위원** 우리대학 재정회계 운영규정 제10조(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등) 제1항에서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이를 학내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제1항에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교육부에서 당초에 그 재정회계법을 하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

부에서 내려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안내려 주고 있습니다. 각 대학자체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자체적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보니깐, 2016년도에 예산과 연계하여야되기 때문에 그 2016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대학회계 본예산에 할 때에, 그 때에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서, 본예산과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자료가 어딴가요? 방금 말씀하신.

○ **배효근 위원**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도 재정중기운영계획은 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에 우리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수립을 내년도 1월중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수립을 해서 재정위원회 회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 따라 제3호 안건을 중기재정운용안을 2016학년도 본예산심의 때 같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제 저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 90일전에 학내 공지하는 게 너무 당겨진게 아닌 가 왜냐하면 우리 법령규정 등에 31쪽에 보시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제3항 7호에 보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사실 지금 이제 추경예산안을 수립해서 한참 예산을 써야 할 판인데 벌써 전년도에 수립한 2015년도 것을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2016년도 중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는 90일전은 좀 빠르지 않나 전체적으로 대학본예산이 40일전에 제출돼야 하고 10일전까지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제 제10조 중기재정운용수립 등에 대한 회계연도 90일전이라는 걸 늦추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바랍니다.

또 제11조에 보면 총장은 1항에 대학회계예산편성 지침을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이 교육부장관이 각대학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깐 아직 전혀 예산편성지침이 오지도 않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이 집행 지침도 이제 각 부서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서 제10조 제11조에 회계연도 몇 일전 몇 개월 전까지도 좀 손을 볼 수 있으면 손을 봐서 본예산

수립하는데 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 회의에서 90일 규정부분하고 3개월 규정부분을 이거를 다 개정을 해서 확정을 하시자는 의견입니까?

○ **위원장 채창현** 꼭 그런 거는 아닌 데 단지 오늘 사실 90일전은 따져보면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대학본부가 12월 2일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공지하면 되는 건데 사실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로 박서는 우리는 본부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우리한테 심의해달라 보내면 그때 일을 하면 되는데 본부에서 걱정이 되니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시나리오수립을 부탁했고 어떻게 중기재정운용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어느 스케줄에 맞춰서 할거냐 부탁을 했어요. 일괄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하고 언제 하고 하겠다가 나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가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가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그냥 계획자체만 평가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좀 더 늦추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90일전에 보고서가 나오려고 하면 사실평가를 일주일전 보름 전에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중간이 아닌가 회계연도 두 번째 회계연도를 반으로 눈다고 그러면 반 정도의 벌써 돈 다 쓰지도 않는 거를 평가하고 이러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두로 던지는 거고요. 오늘은 저희 사무국에서 올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번 첫 회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 심의의결할 때까지 연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게 본 안건입니다.

그 안건을 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본부에서 심의를 하던 이거에 대한 규정개정안이 올라오면 심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면 다시 의결하면 우리가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배효근 위원**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중기재정운용계획수립이 법률에는 어떤 기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전년도에 수립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90일로 회계연도 90일전에 만들자 그랬는데 저희들이 원래 처음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앞에 있어서 예산하고 연계하는 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좀 더해서 우리 본예산을 같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린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3개월 전에 기한에 맞춰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내려 보내서 예산을 편성을 받도록 예산을 만들어 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중기가 몇 년이나, 이게 3년이나, 5년이나 그런 것도 같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5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 **정연구 위원** 근데 그 현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중기재정계획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결이 되는 대로 본예산과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한다하더라도 본예산 검토를 저희가 교수회에서 합니다. 그때 중기재정계획도 저희 교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거기 1항에 보면 총장은 중기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반드시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을 짤 때 이것도 포함될 언제쯤 교수회 검토를 거치고 언제쯤 공청회를 하겠다는 포함되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배효근 위원** 이거는 우리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정위원회의 회부 전에 교수회에 자료를 검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전체적으로 항상 이번에도 느낀 사항이었는데 심의자료도 너무 늦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수요일날 심의자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보다는 그냥 와서 설명 듣고 하는 프로세싱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하루전날 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채창현** 마침 회계예산에 대해서는 법률의 40일전에 심의10일전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전에 제출하라고 10일전까지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30일정도 한달 정도의 검토할 기간이 있지 않나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예산은 워낙 뭐라 할까요. 방대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구정호 위원** 하루 전에 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채창현** 맞습니다.

○ **배효근 위원**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이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회의록이 2매 이상 경우에 간서인을 3명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회의에 대해서는 학생처장님, 천병광 위원님, 황정민 위원님 세분이 간서인으로 호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이나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제2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일동** (박수)

.....

○출석 위원(12인)

채 창 현 이 승 희 이 재 원 방 대 석
배 효 근 김 종 필 정 연구 구 정 호
천 병 광 이 희 천 황 정 민 홍 순 달

[보고사항]

○간사 선임

부서명	직책	성명	연월일
사무국	총무과장	배효근	2015.11.26.